

2023년 남동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

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「남동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4일
인천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
 -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- 사업기간 : 2023년 4월 ~ 12월
 - * 중기부 및 인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남동구 모집 및 사업기간 조정(연장) 가능함
- 지원대상
 -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중소 제조기업 중
 -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(본사 위치와는 무관)이며, 동일 사업자,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
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불가
 -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 주관 「2023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(고도화) 도입기업 협약체결을 완료한 기업
- 지원기간 : 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내용 : “2023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”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

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 - 고도화1 : 중간1 수준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 - *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
 - 동일수준 :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
 -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

지원규모 : 8개사 내외

지원규모	지원유형	지원금 (기업당, 최대)	남동구 지원금 (기업당, 최대)
	고도화1	2억원	1천만원
기초*	5천만원	(자기부담금10%)	

- * 기초수준은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(기초)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고도화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예정
- 기업 현금부담금 중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*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, 이를 제외한 실제 “현금부담금” 을 기준으로 지원 (기업 현금부담금의 10%, 최대 1천만원 지원)
 - ※ 인천시 지원금(고도화 수준)과 중복 수혜 가능(단, 별도신청),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

선정기준

- 별도의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중기부 사업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의 자격 및 제출서류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대상을 선정
- 지원자격, 중기부 사업 협약서 등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을 선정하며, 예산범위내 동일순위가 발생할 경우 중기부 사업 기술성평가 내 「구축필요성→지원적정성→도입기업역량」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진행

□ 지원금 지급

- 협약 후 도입기업이 지원금 지급요청서류 제출 후 지급(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행)

- 제출서류 : 지원금 신청서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, 통장사본

* 이행보증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에서 3개월을 더한 기간

* ex) 협약기간이 2023. 4. 3. - 2023. 9. 2이라면 이행보증보험기간은 2023. 12. 1. 종료

□ 사업추진 절차

지원 절차	세부 수행내용
(ITP) 사업 공고 및 홍보	○ 홍보 :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(고도화) 도입기업 대상 홍보 - 인터넷(남동구청, 비즈오케이 등), 이메일 발송 등
(기업) 사업신청	○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(고도화) 협약체결(선정) - 선정 기준은 도입기업의 명확한 추진 의지, 가시적인 구축 기대효과, 사업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○ 본 사업 신청 :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, 도입기업이 신청 - 온라인(비즈오케이) 접수 (기간 : 공고일로부터~예산소진시까지)
(ITP) 요건검토 및 지원기업선정	○ 서류 검토 : 제출서류 검토 및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 확인 ○ 선정 :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지원 대상을 선정 - 동일순위 발생 시 중기부 사업 기술성평가 내「구축필요성→지원적정성→도입기업역량」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진행
(ITP-기업) 협약체결	○ ITP-도입기업 양자 협약 실시
(도입기업) 지원금 신청	○ 지원금 지급 요청(협약 체결 후, 2주 이내 신청) - 신청서류 :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등
(ITP) 지원금 지급	○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(ITP→도입기업)
(ITP) 중간 및 완료점검	○ 전문 감리기관 및 평가위원을 통한 중간 및 완료점검 실시 ○ 이상없을 경우, 과제 종료

- (사업신청) 중기부 선정협약완료 후 신청 가능
- (양자협약) 중기부 선정에 따른 'ITP-도입기업' 양자 협약 체결
- (지원금 신청) 협약 체결 후, 2주 이내 도입기업이 지원금 신청
- (과제관리)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, 최종감리 진행 결과 과제 “실패” 판정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

<지원금 환수 관리>

-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,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, 전액 환수
- 협약 이후,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
-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
- 사업종료전 도입기업이(공장) 타 지역 이전 시, 지원금 전액 환수
- ※ 상기내용 외 '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'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과제의 포기 및 중단, 실패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회수
- ※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

2. 접수요령

-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까지

※ 중기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, 신청 기간 변동 가능

-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ok.inchoen.go.kr)를 통해서 접수

- 기업지원 신청 → ‘2023 남동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’ 에서 온라인 접수

-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 1부(별첨)
- 개인[기업]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별첨)

3. 문의처

- (접수문의)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(032-260-0623)

[붙임1] 지원사업 신청서 1부

[붙임2]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끝.